# 근 로 계 약 서 (갑지)

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
| 사용자 | 상 호 | (주)동양/건설부문 | 대표자 | 정진학 |
| | 주 소 |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4, 3층 (여의도동) | | |
| 근로자 | 성 명 | 신혜영 | 생년월일 | 1983.02.15 |

아래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.
- 아 래 -

| | | | |
|---|---|---|---|
| 근로기간 | 2018년 6월 1일부터 ~ 2020년 7월 31일까지<br>(현장종료일까지) | 직원유형 | 현장계약직 |

| | |
|---|---|
| 근로장소 및 종사업무 | 1. 근로장소 : 충주호암 A-4BL 행복주택 건설공사 2공구 현장<br>2. 종사업무 : 사무보조<br>3. 근로장소 및 종사업무는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,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. |
| 임금 | 1. "근로자"의 월급여는(₩ 1,800,000 ) 으로 하고, 매월 25일에 정기 지급하며,<br>급여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.<br>① 기본급 (₩ 1,800,000 )<br>2. 입사와 퇴사월은 근무일수를 산정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.<br>3. 월급여의 산정대상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로 한다.<br>4. "사용자"는 근로소득세, 고용보험료, 건강보험료, 국민연금 등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한 후 "근로자"의 은행계좌에 매월 25일(휴일의 경우는 전일) 입금한다.<br>5. "근로자"가 퇴직하는 경우 "사용자"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거 퇴직금을 지급한다. |
|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| 1. 시업 및 종업시간은 08:30 ~ 18:00로 한다. 단, 업무형편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.<br>2.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,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.<br>단, 회사의 형편에 따라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제반사항 규정 한도내에서 연장 또는 변경할 수 있다.<br>3. 휴게시간은 12:00 ~ 13:00, 15:00~15:30로 한다.<br>단, 업무형편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. |
| 휴일 및 휴가 | 1.유급휴일 : 주휴일(해당 주일을 만근한 자에 한함), 공휴일, 근로자의날, 회사창립기념일<br>2.무급휴일 : 토요일<br>3.연차휴가 :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거 연차휴가를 부여한다.<br>4.연차휴가에 대하여 회사가 사용촉진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치 아니하는 경우 별도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. |
| 사직절차 | 1. "근로자"는 계약기간 중 사직하고자 할 경우 사직일로부터 14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,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. |
| 근로계약의 해지사유 | 1. 현장이 종료됐을 때 또는 현장운영상의 이유로 인원 감축이 부득이 할 때<br>2. 안전수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(안전보호구 미착용 등)<br>3.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 및 절차에 의거 해고되었을 때 |
| 기타 근로조건 | 1.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,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 제규정에 따른다.<br>※단, "사용자"는 "근로자"에게 경조금,학자금,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, "근로자"는 "사용자"의 상조회에 가입하지 아니한다.<br>2. 근로장소 및 직무는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, "근로자"는 이에 따라야 한다.<br>3. "근로자"는 상기 임금에 동의하며, 임금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지 않는다. |

**2018년 6월 1일**

**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의 사본을 사용자로부터 교부받았음을 확인함.**

**[ 사용자 ]**
**(주)동양/건설부문**
**대 표 이 사 : 정 진 학 (인)**

**[ 근로자 ]**
**생년월일 : 1983.02.15**
**성 명 : 신혜영 (인)**